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나 종사자가 위생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등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양장비에 대한 임차를 허용하는 등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기준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5. ~ 10. 15., 10. 18. ~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1) 1차 위반 시		20

2) 2차 위반 시	40
3) 3차 이상 위반 시	60

제2조(「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설 기준의 지정요건란의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제목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150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법 제34조제2항제2호	150

을 변경한 경우		
다.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100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4호	100
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5호	200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6호	200
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	
1) 1차 위반 시		100
2) 2차 위반 시		200
3) 3차 이상 위반 시		300
아.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7호	5

제5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를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었.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8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임차 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및 같은 항 제2호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보관시설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다”를 “보며, 임차 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나목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1년간(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15	20
만원	만원	만원

제12조(「악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시설 또는 제2호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어장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호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 및 장비의 지정기준란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6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1년간”을 “1년간(제2호수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5년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수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20	30
----	----	----

제17조(「종자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기준

시설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 면적 기준 중 각각 가장 넓은 면적 기준(면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 기준을 말한다)을 적
----	--

	용한다.
장비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 및 성형된 버섯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 기준 중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 것.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또는 사목의 교육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 것.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또는 사목의 교육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가목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1) 1차 위반 시		20만원
2) 2차 위반 시		3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제22조(「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9)까지 및 11)부터 17)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조, 제6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제 1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수중레이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수중레이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 한 교육) ① ~ ③ (생 략)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 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 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u>
<u>④·⑤</u> (생 략)	<u>⑤·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5항</u> 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u>⑦ ----- 제6항-----</u> ----- ----- -----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때에도 그 총액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수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생략)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u>
<u>④·⑤</u> (생략)	<u>⑤·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⑥ 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⑦ 제6항</u>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⑦·⑧</u> (생략)	<u>⑧·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교육) ①·② (생략)	제38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설></u>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팀	
연 락 처	(044) 202 - 285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3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0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4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연 락 처	(042) 481 - 4076